

##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3-170호

『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(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-62호)』  
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  
니다.

2014년 4월 28일  
중 소 기 업 청 장

###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(안) 행정예고

#### 1. 개정이유

-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신규지정품목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기준 마  
련 및 직접생산의 확인기준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여 하청생산  
의 방지 및 직접생산 확인제도의 적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함

#### 2. 관련근거

-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 9조

#### 3. 주요내용

-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신규지정된 제품에 대하여 제품별 세  
부 기준 제정(전동식 의료용 침대 등 7종)
- 동일소재지에 복수의 기업체가 생산공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 생  
산공장이 격벽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나 각 제  
품별 세부기준에서 정하는 경우 예외 인정(제7조)
- 건축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공장면적이 500㎡미만인 소기업이 공  
장을 미등록한 경우에 건축물관리대장에 용도가 '공장' 또는 제1  
종,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허가된 경우에는 현장에서 확인

하여 공장으로 인정(제8조)

- 근린생활시설(2종)의 용도가 제조업소인 경우만 인정⇒근린생활  
시설(1종,2종)인 경우 용도 구분없이 인정

- 창업초기 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전기 사용실적 확인시에  
사업자등록일 기준 2년이내의 창업초기 기업에 대해서는 경쟁제  
품별 세부기준에서 정하는 전기 사용실적의 50%를 적용(제 14조)
- 모터펌프 등 36개 제품의 세부기준의 기준완화, 문구 명확화, 오  
기 수정 등

4. 행정예고(공고) 기간 : 2014. 5. 7

5. 공고방법 : 중소기업청 홈페이지(<http://www.smba.go.kr>)에 공고

6. 의견제출 : 『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(안)』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 
경우 공고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제출처 : 중소기업청 공공구매제도과

○ 제출방법 : 방문, 우편, 전자우편

\* 방문, 우편 : 대전 서구 선사로 139(둔산동 920) 정부대전청사

중소기업청 공공구매제도과(☎ 042-481-8918)

\* e-mail : [sangk99@smba.go.kr](mailto:sangk99@smba.go.kr)

4. 기타사항 :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(안)을 마련하는 과정(공청회,  
간담회 등)에서 제출·검토된 의견과 동일한 사안은 의견수렴 대상  
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